산업통상자원부 / 해양수산부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17일(화) 11시(국무회의 종료시)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2. 17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330)	담 당 자	김성철 사무관(044-203-4334)
	서진희 과장(044-200-5830)		황정웅 사무관(044-200-5836) 김태홍 주무관(044-200-5837)

친환경선박 개발 ·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-「친환경선박법」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(12.17),' 20.1.1 법 시행-

- ☞ **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매년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 수립**
- ☞ **정부 ·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 · 구입 의무화**
- ☞ **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보유자, 친환경선박 연료생산자 등 지원 근거 마련**
- ☞ **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 시행**

□ 정부는 12월 17일(화) 국무회의에서 **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"친환경선박법",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) **시행령 제정안이 통과**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최근 미세먼지 저감,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·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**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·보급 촉진을 위한「친환경선박법」이 2020년 1월 1일 시행**을 앞두고 있다.

○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「**친환경선박법 시행령**」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·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·변경,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**「친환경선박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.**

□ 또한,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**내항선, 여객선, 어선, 유도선,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**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, 이를 통해 **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**으로 예상된다.

□ 아울러, **친환경선박의 개념**을 특정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(액화천연가스), LPG(액화석유가스), CNG(압축천연가스), 메탄올, 수소, 암모니아 등 **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**과 전기추진선박, 하이브리드선박, 수소 등을 사용한 **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이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**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**하고 **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**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**공공선박은 법 시행일('20.1.1)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·구입을 의무화**하여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에 「**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**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, 소속 **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**에 있다.

□ 내년 1월 1일부터「친환경선박법」이 시행되면 **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**되어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, 이를 바탕으로 한 **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운 및 조선·해양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**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 관계자는 "「친환경선박법」이 **온실가스 감축,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·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**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**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성철 사무관(☎ 044-203-4334) 또는 해양수산부 황정웅 사무관(☎ 044-200- 58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「친환경선박법 시행령」 제정안 주요내용

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(시행령 안 제2조~제4조)

○ (**기본계획 수립·변경 절차**) 해수부·산업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**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**

* 기본계획 포함사항(법 제3조) : ①친환경선박 개발·보급 기본방향, ②중장기 목표, ③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항, ④환경친화적에너지 보급의 기반시설 구축, ⑤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등

○ (**개발 및 보급시행계획**) **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**를 거쳐 **매년 수립·시행**하고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

* 산업부는 개발시행계획, 해수부는 보급시행계획 수립·추진(법 제4조·제5조)

2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 등(시행령 안 제5조~제7조)

○ (**구성**) **개발정책협의회(산업부), 보급정책협의회(해수부)**를 각각 **운영**하고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부·해수부 차관이 맡음

* 정책협의회 위원 :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

** 정책협의회 기능 :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,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(법 제7조)

3 기술개발지원시책 및 기술기반조성사업(시행령 안 제8조·제9조)

○ (**기술개발지원시책***)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**기술개발지원시책**을 **수립·공고**토록 하고 관련 **운영규정**을 **제정**할 수 있도록 함

* ①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, ②기술의 현장적용, ③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·제공,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(법 제8조)

○ (**기술기반조성사업***)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**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**을 **수립·공고**토록 함

* ①기술기반구축사업, ②국제기술협력사업, ③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,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(법 제9조)

-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, 기술개발사업, 신기술 창업보육사업, 해양환경기술사업을 추가함

4 친환경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(시행령 안 제10조)

○ (**지원주체**) **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**

○ (**지원대상**)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**해양수산 관련법에 근거**하여 **면허, 허가 등을 받은 자***

* 해상여객·화물운송사업자, 유·도선업자, 원양어업자, 수산업자, 연·근해 및 내수면 어업자, 예선업자, 해양환경관리업자, 항만운송사업자 등

○ (**지원방법**) 친환경선박 **가격총액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**를 **보조**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**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**

-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, 기자재 설치 소요비용의 일부 보조,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

○ (**지원시책**) 인증을 받은 자에게 **자금**을 **우선 지원**하거나 **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**을 **부여**하는 등의 **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**

5 친환경선박의 연료생산자 등 지원(시행령 안 제11조)

○ (**지원주체**) **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**

○ (**지원대상**) LNG 등 **친환경 선박연료**를 **공급·판매하는자, 생산시설 또는 운송·공급시설을 신설·증설하려는 자**

○ (지원방법) **소요비용*** **및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**, 필요 자금의 **일부 융자나 융자알선 지원**,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·공급시설의 **운영자금 지원** 등

*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이나 운송·공급시설의 제작·신설·증설에 소요되는 비용

○ (**자금의 반환 등**) **지원조건**을 정당한 사유 없이 **불이행**하거나 자금을 **목적 외**로 **사용**하는 등의 경우 **지원금 반환 또는 지급 중단**

6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지원(시행령 안 제12조)

○ (**지원주체**) **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**

○ (**지원대상**) 친환경선박이 아닌 **일반선박을 폐선**하고 **친환경선박**을 **건조하는** 경우 그 **선박소유자**

○ (**지원방법**) 소요되는 **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**,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**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**

○ (**지원시책**) 인증을 받은 자에게 **자금**을 **우선 지원**하거나 **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**을 **부여**하는 등의 **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**

참고 2 「친환경선박법」 주요내용

□ **목적**(제1조) :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모

□ **정의**(제2조) :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**"환경친화적 선박"의 개념 도입**

○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적용 선박,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선박, 전기추진선박, 하이브리드선박(연료+전기에너지), 연료전지추진선박

□ **기본·시행계획 수립 및 인증제**(제3~5조) :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**기본(5년) 및 시행(매년) 계획 수립·추진**

○ (**기본계획**) 해수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

○ (**시행계획**) **해수부**가 **보급시행계획**, **산업부**가 **개발시행계획 수립·추진**

○ (**인증제**) 해수부가 **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**에 대한 **인증제 시행**

□ **정책협의회**(제7조) :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**해수부 보급정책협의회, 산업부 개발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**

□ **기술개발지원시책**(제8조) : 국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·추진

□ **기술기반조성사업**(제9조) : 국가는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한 조성사업 추진

□ **자금 등 지원**(제10조~제12조) : **국가·지방자치단체**가 친환경선박의 매입·개조, 기자재의 설치·교체,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·판매 또는 공급시설의 설치,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에 **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**

□ **친환경선박 구입 의무**(제13조) : **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**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**친환경선박 의무 구입**

□ **자금지원을 위한 재원**(제14조)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